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경상북도에서는 '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용자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음.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8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1) 기 금 명 :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2) 주관기관 : 경상북도
- (3) 조성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4) 출연금액 : 금228,000천원

(5) 조성목표 : ('93~'17년)2,000억원 → ('22년까지)2,500억원 이상

(6) 조성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연장)

(7)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이자

※ 출연근거 :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나.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또는 농·수협 등

(2) 지원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물개발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3)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 법인 : 5억원 이하
 - 기타(가공산업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지원형태 : 융자지원 100%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4) 사업추진절차

- '17. 8월 : 사업지원계획 시달(도)
- '17. 8~9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
- '17.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18.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 신청(사업자 ⇒ 시)
- '18. 1~12월 : 사업완료확인서 발급(시)
- '18. 1~12월 : 융자실행(금융기관)

다.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

(1) 구미시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93~'17년 출연실적	'17년 출연액	'18년 출연계획	비고
구미시	5,340	284	228	

(2) 경상북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6년까지	'17년	'18년
재 원 별	계	216,888.7	198,788.7	9,100	9,000
	도	50,893.4	45,893.4	2,500	2,500
	시·군	89,700.0	80,700.0	4,500	4,500
	농·수협등	18,970.3	16,970.3	1,000	1,000
	운영수익	57,325.0	55,225.0	1,100	1,000

(3) 연도별 지원실적(구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6-'10	'11	'12	'13	'14	'15	'16	'17
농가수(호)	230	140	8	8	29	9	7	12	17
융자금액	22,418	12,981	865	742	1,651	1,390	795	1,980	2,014

라. 출연의 필요성

- (1)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93년부터 조성 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
- (2)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근거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관 실·과		농정과
입 안 자	과 장	이 형 근
	담 당	강 의 규
	담 당 자	차 명 규 (480-5763)